

제 호

폐기물분석전문기관 지정서

- 1. 기관명 :
- 2. 대표자 :
- 3. 소재지 :
- 4. 지정분야 : ○ ○ 분야
- 5. 시설·장비 내역

시설내역	
장비내역	

위 기관을 「폐기물관리법」 제17조의2제1항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19조의2제4항에 따라 폐기물분석전문기관으로 지정합니다.

년 월 일

국립환경과학원장

직인

